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안 제36조의2)

정보보호 규율대상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범위를 융합분야의 대표적인 산업분야로 규정

나. 침해사고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안 제54조의3, 안 제60조의2)

1)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

다.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안 제60조의3부터 안 제60조의9까지)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운영하기 위한 인

증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3년을 유효기간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을 받은 이후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인증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휴·폐업시 신고, 양수·합병으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를 각각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9까지로 하고, 제36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란 가전, 교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기기·설비·장비로서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초래되는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설비·장비를 말한다.

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정부는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4제4항”을 “법 제47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인터넷진흥원과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함께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 준수명세서
2. 사용자 설명서
3. 시험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4.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정보보호인증신청서와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을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시험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용도, 이용기간 등 특성,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인증의 신청, 인증시험 방법, 정보보호인증서의 발급,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아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안 취약점이 보완되기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

라 효력을 정지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인증시험대행기관,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사실과 사유 등 관련 사항을 자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인증의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변경·재인증 등) ① 제60조의3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에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은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해당 기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인증의 변경·재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6(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근 2명 포함)과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것

2.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설비,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추는 것

3. 인증시험 및 인증사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요건·능력을 갖추는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 지정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그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에게 인증시험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는 경우

2. 인증시험대행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재지정, 지정기준·재지정기준,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시험대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등)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전

년도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그 업무를 변경하거나 휴업·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양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친 후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인증시험실적보고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양수·합병 승인, 지정취소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8(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부터의 정보보호 인증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정보보호인증

의 변경·재인증 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후관리 등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

별표 9 제1호라목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8까지의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란 가전, 교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기기·설비·장비로서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초래되는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설비·장비를 말한다.</u>
<u>제36조의2 ~ 제36조의8 (생략)</u>	<u>제36조의3 ~ 제36조의9 (현행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와 같음)</u>
<u><신 설></u>	<u>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정부는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법 제47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u>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5항-----

1. ~ 4.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인터넷진흥원과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함께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 준수명세서

2. 사용자 설명서

3. 시험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4.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정보보호 인증신청서와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을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시험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용도, 이용기간 등 특성,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인증의 신청, 인증시험 방법, 정보보호인증서의 발급,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보안 취약점을

<신 설>

보완하지 않아 이용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안 취약점이 보완되기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효력을 정지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인증시험대행기관,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사실과 사유 등 관련 사항을 자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변경 · 재인증 등) ① 제60조의3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에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은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해당

<신 설>

기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인증의 변경·재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6(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근 2명 포함)과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것
2.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설비,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추는 것

것

3. 인증시험 및 인증사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요
건·능력을 갖추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받으
려는 자가 제1항의 기준을 충족
하는지를 심사하여 3년의 범위
에서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
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 지
정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고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2항
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
월 전부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
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그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인터넷진흥원에게 인증시험
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
된 기관이 없는 경우

2. 인증시험대행기관이 수행하
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재지정, 지정기준·재지정기준,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시험대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다.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등)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전년도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그 업무를 변경하거나 휴업·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양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신 설>

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친 후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인증시험실적보고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양수·합병 승인, 지정취소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8(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부터의
정보보호인증신청서와 결과보
고서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
급, 정보보호인증의 변경·재
인증 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후관리 등 정
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연 락 처	(044) 202 - 6457